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지훈	8409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결정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분 원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유지훈	●●●지점 소속 모집인 유지훈은 2018.11.26. 신용카드 연회비(4.9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14.9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14조, 제14조의5, 제72조	과태료 60만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2.1.7.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보 공고 일로부터 74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8)로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00-27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